

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투자설명서(간이투설 포함)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□ **효력발생일:** 2016년 9월 1일(목)

□ **대상 펀드**

1.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2.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3.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4.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5.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6. AB 위안화 플러스 UH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□ **펀드별 변경대비표**

1.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, 나. 투자 제한	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	<u>라.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u>	<u>라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 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u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 구조, 가.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	비교지수 변경	<u>33% Barclays Capital High Yield 2% Constrained (원화 헤지)/ 33% JP Morgan GBI-EM/ 33% JP Morgan EMBI Global(원화 헤지)</u>	<u>Barclays Global High Yield Bond Index (USD hedged)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개정세법에 따라 결산시 평가이익 등 분배 유보 사항 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<u>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(零)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 수익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(<u>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</u> 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)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수익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수익자

		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	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 <u>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(零)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연도별 운용실적 가. 연평균 수익률 나. 연도별 수익률	비교지수 변경		<u>자료 업데이트</u>

2.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연간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, 가.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	비교지수 변경	<u>33% Barclays Capital High Yield 2% Constrained (원화 헤지)/ 33% JP Morgan GBI-EM/ 33% JP Morgan EMBI Global(원화 헤지)</u>	<u>Barclays Global High Yield Bond Index (USD hedged)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연간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연간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연간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, 가. 연평균 수익률 나.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	연간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,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	연간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
3.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4.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연간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연간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연간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연간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, 가. 연평균 수익률 나.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	연간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,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	연간 갱신		<u>자료 업데이트</u>

5.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6. AB 위안화 플러스 UH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,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다. 모자형 구조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변경		<u>모자형집합투자기구 그룹 내 다른 자 집합투자기구 관련 도표 및 내용 삭제</u>
8-2.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, 나. 투자 제한	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	<u>라.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u>	<u>라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개정세법에 따라 결산시 평가이익 등 분배 유보 사항 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<u>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(零)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 수익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(<u>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</u>)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수익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 <u>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(零)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

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집합투자규약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□ 대상 펀드 :

1.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2.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3. AB 위안화 플러스 UH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4.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
□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1.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제2호	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	라.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	라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제33조(이익분배) 제1항	개정세법에 따라 결산시 평가이익 등 분배 유보 사항 반영	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(零)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	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고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(零)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 자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
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 제4항	문구 정정	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(삭제)

2.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
3. AB 위안화 플러스 UH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33조(이익분배) 제1항	개정세법에 따라 결산시 평가이익 등 분배 유보 사항 반영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(零)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고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(零)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 자산의 평가이익 2.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
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 제4항	문구 정정	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(삭제)

4.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제2호	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개정사항 반영	라.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	라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제33조(이익분배) 제1항	개정세법에 따라 결산시 평가이익 등 분배 유보 사항 반영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(零)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고, 법 제242조에 따른 이

			<p><u>익금이 0 (零)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 <p><u>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</p> <p><u>2.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u></p>
--	--	--	---